

항소&심리

1단계

일차 결정에 대한 항소

본 팸플릿에는 고용보장법에 따른 귀하의 권리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팸플릿은 실업보험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 및 적격성에 대한 일차 결정에 항소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하급 기관 항소(1단계) 증거 심리는 노스캐롤라이나 상무부, 고용보장국(DES) 항소관의 항소 심판관이 담당합니다.

전직 DES 직원이나 UI 급여의 금전적 자격, 청구인과 고용주의 법적 관계, 고용주의 납세의무 지위에 관한 심리는 노스캐롤라이나 상무부, 재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2013년 6월 30일 이후 제출되는 배상청구의 청구인은 추후 항소에서 반복되는 결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급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C. Gen. Stat. § 96-18(g)(2)

심리는 일반적으로 항소 사건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제시할 유일한 기회입니다. 항소에 관한 자세한 "FAQ"는 DES 웹사이트 www.des.nc.gov를 참조하십시오.

Usted puede obtener una copia de este folleto en español en la oficina de l Departamento de Comercio, División del Desempleo de Carolina del Norte.

항소를 제출할 기관 및 방법은?

결정은 쟁점에 따라 DES의 다양한 실무 부서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결정은 항소 제출 지침이 포함됩니다. 결정에 포함되는 지침에 따라 동봉되는 주소에 항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제출 기한은?

결정은 항소 제출 기한을 통지합니다. 귀하가 항소하는 문서에 기재된 날짜는 기한을 규제합니다. 항소 기한이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항소 기간은 다음 업무일에 종료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결정에 항소할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DES는 항소장 내용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단, 귀하의 항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항소장 제출의 특별한 양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항소 의사를 밝히고 결정에 반대하는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항소 대상이 되는 결정의 소송사건일람표 또는 식별번호, 청구인의 식별번호, 청구인 및 고용주의 이름, 항소를 제기하는 개인의 이름, 당사자를 대신하여 항소장을 작성하는 개인의 공식 직위, 전화번호를 포함시키십시오.

일차 결정의 항소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DES는 귀하의 항소에 따른 심리 일정을 정합니다. 일시나 지정 항소 심판관 연락처, 판정을 구하는 쟁점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 심리 통지가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일차 결정 항소에 법률 대리인을 고용해야 하나요?

행정 심리에서 법률 대리를 맡길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청구인 또는 고용주는 직접 항소를 제기하고 행정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자기변호(pro se)를 수행하거나 법률대리인에게 변호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심리 전에 구해야 합니다.

법률대리인의 자격은?

법률대리인은 N.C. Gen. Stat. § 96-17(b)에 따라 면허 변호사 또는 면허 변호사의 감독을 받는 자로 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물색할 수 있는 곳은?

노스캐롤라이나 변호사협회 변호사 소개 서비스 (800) 662-

7660나 노스캐롤라이나 법률구조 무료전화 (866) 219-5262로 문의하거나 지역전화번호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DES에 법률 대리인을 고용했다고 알려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대행 통지 또는 증명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식 심리 기록의 일부가 되기 위해 항소 심판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우편주소나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DES는 일반적으로 귀하가 최종 공개한 주소에 전체 서한을 송부합니다. 귀하는 주소 변경의 발효일 이후 7일 안에 DES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신규 주소 통지는 우편주소 Customer Call Center, Post Office Box 25903, Raleigh, NC 27611; 팩스 (919) 250-4315, 또는 이메일 des.us.customerservice@nccommerce.com로 송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SCUBI에서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최종 공개 주소”는 귀하가 DES에 제공한 가장 최근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DES는 미우정국(USPS) 국가주소변경(NCOA)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로 자체 기록내 주소를 업데이트합니다. DES 기록에 포함된 귀하의 최종 공개 주소가 NCOA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납세자의 이름 및 이전 우편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 NCOA 데이터베이스의 신규 주소는 귀하의 최종 공개 주소입니다. DES의 통신문을 전자 전송으로 수령하고 싶다면 유효한 최신 이메일 주소를 DES에 제공 및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항소가 계류중일 경우 항소를 취급하는 과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의 주소나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는 주소 변경의 발효일 이후 7일 안에 DES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우편주소 DES's Tax Administration Section, Attn:Address Change, Post Office Box 26504, Raleigh, North Carolina, 27611; 팩스 (919) 715-7194, 또는 이메일 des.tax.customerservice@nccommerce.com로 주소 변경 통지를 송부해야 합니다. 항소가 계류 중일 경우 항소를 취급하는 과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결정에 제시된 정보와 다른 방식으로 항소 제기를 권유하면 어떻게 하나요?

귀하는 귀하의 결정에 제시된 서면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DES에서 받은 문서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각 문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 DES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DES 연락처는 문서에 제공되거나 청구인이나 고용주 여부에 따라 본 팜플릿 패널 8에 기재된 주요 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제시 또는 설명할 문서를 준비하십시오. 가장 최근 문서는 이전 서한에 포함된 정보를 취소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DES에 대한 연락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통지에 따르면 전화회의로 심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대면 심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 또는 귀하의 심리 통지에 기재된 항소 심판관에게 서면 요청을 제출하여 대면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 심리는 지역 노동문제해결국(DWS) 또는 주 전체에 소재하는 공공고용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심리 절차는?

항소 심판관은 심리를 주재하고 각 출석자를 확인하고 심리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항소 심판관은 질의에 덧붙여 증거를 확인 및 인정하며 동의 및 반대를 판정합니다. 귀하와 귀하의 증인은 증언에 나서고 증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이 제시하는 증언이나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심리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일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심리 일정을 변경하려면 항소 심판관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요청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귀하는 심리 일정 변경에 대해 법적으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유를 입증할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서는 승인 또는 불허됩니다. 항소 심판관이 심리 일정 변경 요청서를 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는 당사자 일방의 질환이나 직계가족의 사망, 번역자의 필요성, 배심원 의무, 현역 복무가 포함됩니다. 심리일까지 귀하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심리 진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심리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에 항소한 당사자는 항소가 각하됩니다. 항소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 없이 심리가 진행됩니다. 항소 심판관은 심리에 출석한 당사자가 제시하는 증거를 토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이 귀하에 유리한 경우라도 심리에 출석해야 합니다.

심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리 통지를 꼼꼼하게 읽으십시오. 심리 통지에 동봉된 일체의 서류를 읽으십시오. 이는 심리에서 증언할 증인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귀하의 입장을 입증하는 문서, 기록 및 기타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심리가 전화로 진행된다면 심리일 이전에 항소 심판관과 각 당사자에게 증거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면 심리를 위해서는 각 당사자와 항소 심판관에 제공할 사본을 충분히 마련하십시오. 상대방과 항소 심판관에게 사본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항소 심판관은 귀하의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해당 증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을 선정하여 심리에 참석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전화 심리의 경우 항소 심판관에게 연락하거나 심리 통지에 동봉되는 전화 심리 설문을 작성 및 반송하여 증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하십시오.

심리에서 제출해야 하는 증거는?

목격자와 직접 증언은 항상 최상의 증거입니다. 직접 증언에는 말이나 행동을 직접 말거나 느끼거나 보거나 들었던 증인이 포함됩니다. 행위 혐의의 기록물이 있을 경우 증인이 보거나 들었던 내용에 대해 증거로 제시되지 않은 기록물에 포함되는 증인의 증언이 아니라 해당 기록물이 최상의 증거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에 서명하였거나 서면을 제출했다는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 증거를 제출할 수 있지만 항소 심판관과 상대방에게 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증인에게 심리에서 자발적으로 증언하거나 본인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문서나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지만 증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증인이 이를 준수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귀하의 심리 통지서에 기재된 항소 심판관에게 연락하여 증인에 대한 소환장 및/혹은 기타 증거의 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소환 요청은 서면을 작성하고 4 N.C. Admin. Code 24C .0401을 준수해야 합니다.

약물이나 알코올 검사 결과로 발생하는 해고와 관련한 사건에 대

해서는 특별한 요건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사 및 그 결과를 입증 또는 반박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증거는 직무 규칙 및/혹은 정책도 포함해야 합니다. 규제물질 검사규제법(CSERA), N.C. Gen. Stat. 95 §§ 230-235에 따라 미 교통부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검사를 관장하지 않는 한 검사는 절차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하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직원의 규제 물질 검사에 대한 양성 결과; (2) 약물 검사 시료의 관리 연속성; (3) 규제 물질 검사의 신뢰성; (4) 직원이 고용주의 정책을 위반한 정확한 내용. 심리에 참석하는 시험소 대리인의 실제 증언 대신, 규제 물질 시험 결과와 관리의 연속성, 법률로 요구되는 해당 검사 및 재검사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시험소 공인대리인의 선서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CSERA의 준수를 입증하는 경우, 규제 물질 검사의 양성 결과는 직무와 관련한 위법 행위를 구성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타당한 사유 없이 합리적이고 적절히 시행되는 약물 검사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직원의 거부는 위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청구인이 심리 중이나 선서진술서를 통해 규제물질 검사 결과 및 법정 또는 규제 절차 요건의 준수를 시인 또는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 및 준수가 입증된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N.C. Gen. Stat. § 96-14.6 참조.

모든 항소가 판정될 때까지 배상청구를 계속 제출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귀하가 실업자인 경우에는 모든 항소가 판정될 때까지 주별 증명서를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이 청구되지 않은 주는 금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N.C. Gen. Stat. §§ 96-14.9 and 96-15(b)(2) 참조.

심리 전에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DES 웹사이트 www.des.nc.gov, "FAQ" 섹션에 방문하여 노스캐롤라이나 행정법 제4편, 제24장을 온라인으로 검토하거나 귀하의 심리 통지에 기재된 항소 심판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항소 심판관은 사건의 제반 사실이나 귀하 측의 주장, 사건에 예상되는

결과를 논의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제반 사실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각 당사자가 입회해야 합니다. 항소 심판관은 심리 절차에 관한 문의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주: 04 N.C. Admin. Code 24C .0209에 따라 항소 심판관은 심리가 종결된 후 당사자 또는 증인과 사건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장법 사본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고용보장법은 노스캐롤라이나 일반법령 제 96장에 포함됩니다. DES의 행정 규칙은 노스캐롤라이나 행정법 제4편, 제 2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S 웹사이트 www.des.nc.gov, 행정심리사무소 웹사이트 www.oah.state.nc.us/rules 또는 <http://reports.oah.state.nc.us/ncac.asp>에서 준거법 사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S 주요 연락처

고객

콜센터(청구인) - 888-737-0259

고용주 콜센터 - 866-278-3822

귀하가 항소하는 결정이 다양한 DES 실무 부서의 이름과 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항소과에서 정보를 구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Appeals Section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Post Office Box 25903

Raleigh, NC 27611-5903

전화: 919-707-1060

팩스: 919-733-1228

이메일: des.public.appeals@nccommerce.com

웹사이트: www.des.nc.gov

노스캐롤라이나 상무부 발행
자세한 정보는 www.des.nc.gov 참조.

양식 NCDES 568-E (Rev.. 4/2017)